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8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2.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10
※ 참고자료	21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21
2. 최근 5년간 중점평가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22
3. 현행법 제52조(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와 안 제52조의4(심층평가 대상 결정) 조문 비교	26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4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과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 등을 거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치는 등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음.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아닌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설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심층평가사업 등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점평가’ 사업에 대한 사항을 이법의 ‘심층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심각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조정을 실효화 함(안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과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부터 안 제49조의6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장의2 환경영향평가위원회</u>
<u><신 설></u>	<u>제49조의2(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u>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1.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사항</u>
	<u>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u>
	<u>3. 제52조의3제2항의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u>
	<u>4. 제52조의4제1항의 심층평가 대</u>

현행	개정안
<신 설>	상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6제1항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49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생태학, 동·식물학, 화학, 보건학 등 환경과 관련된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환경 관련 협회,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경

현행	개정안
	<u>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u> ③ <u>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그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49조의4(위원회의 위원장) ①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u><신 설></u>	제49조의5(위원의 임기 등) ① <u>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② <u>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u>
<u><신 설></u>	제49조의6(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u>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학계, 시민단체,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u>

현행	개정안
	<u>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u> ③ <u>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전문위원의 수, 임기,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¹⁾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등은 평가준비서 작성 및 항목 등의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데²⁾, 이 중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대상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2) <참고자료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성·운영되고 있음.³⁾

다만,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결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대상이 되는 개별 계획이나 사업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결정의 정확성·공정성 및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상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위원구성을 환경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등으로 하고,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결정의 일관성 확보와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제고 및 이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연구」(녹색연합, 2024.12.)

첫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신속평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다른 ‘환경영향평가위원회’와의 심의사항 중복⁵⁾ 및 관련 절차 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비효율과 절차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⁶⁾에서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위원회로의 설치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나 현행법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⁷⁾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환경영향평가협의회(현행 법 제8조)	환경영향평가위원회(안 제49조의2)
·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제52조의3제2항의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52조의4제1항의 심층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 제52조의6제1항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도 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⁸⁾⁹⁾

7)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신설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자문기관(자문위원회 등)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8) [現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안) 위원구성 비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법 제8조제2항)	환경영향평가위원회(안 제49조의2)
·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통령령 위임)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생태학, 동·식물학, 화학, 보건학 등 환경과 관련된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환경 관련 협회,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9) 이외에 이해관계자인 ‘한국플래너협회’는 현행법에 따른 협의회가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특성이 권에 의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별도의 상설위원회 구성은 중복행정으로 사업자·이해관계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환경영향평가사회’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격과 경험을 보유한 환경영향평가사가 위원회에 필수 인력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안은 ①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안 제52조의4), ②동 위원회로 하여금 협의기관의 장에게 합동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52조의5), ③위원회가 심층평가 대상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2조의6), ④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장의2 심층평가 대상
<신설>	제52조의4(심층평가 대상 결정) ①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등 갈등이 있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검토·협의 등이 필요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현행	개정안
	<u>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2. <u>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3. <u>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검토·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 4. <u>그 밖에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② <u>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52조의5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제52조의6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u>

현행	개정안
<신설>	제52조의7에 따른 전문가 자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층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의5(심층평가 대상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이 심층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할

현행	개정안
<신설>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 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 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2조의6(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장, 지역주민,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체 협의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

현행	개정안
	<u>향 제시(필요한 경우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u> 2. <u>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지역 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다)</u> 3. <u>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u> 4. <u>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 요청</u> 5. <u>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조정·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⑤ <u>협의회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회 필요할 경우 검토기관의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u> ⑥ <u>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u>

현행	개정안
<신 설>	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의결 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의7(전문가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건축, 자연·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현행	개정안
	부한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자문위원에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승인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은 협의기관장으로 하여금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등을 ‘중점평가사업’으로 규정하여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사

10)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업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¹¹⁾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협의기관장¹²⁾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2건만 개최되는 등 그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고,¹³⁾

개별 계획이나 사업별로 구성·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

11)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중점평가사업) ① 협의기관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②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경우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 (이하 생략)

3. 그 밖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 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전문가 자문 등) ① 협의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1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보완·조정·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는 94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2건 실시됨.

구체적 실시 현황은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중점평가사업 관련 현황> 참고

층평가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대상사업의 결정에 있어 일관성·공정성·민주성 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¹⁴⁾

이에 개정안은 현재 부처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중점평가사업’에 대한 사항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심층평가 대상에의 해당 여부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신뢰도 향상과 결정의 일관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52조의4(심층평가 대상 결정)와 현행법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는 모두 심층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⁵⁾.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심층평가 대상 결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심층평가 대상 결정기준은 불필요하고,

14)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연구」(녹색연합, 2024.12.)

15) 현행법 제52조의2와 개정안 제52조의4는 모두 심층평가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음.

※ 구체적 비교는 <참고자료 3. 현행법 제52조(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와 안 제52조의4(심층평가 대상 결정) 조문비교> 참조.

개정안에 포함된 심층평가 대상 일부¹⁶⁾는 명확한 기준 부재로 판단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예측가능성 저해에 따른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⁷⁾¹⁸⁾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와 합동현지조사 실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갈등은 다양한 사유¹⁹⁾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 발생 원인 분석을 토대로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에서 전문적 검토를 거쳐 사안별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임.

합동현지조사의 필요 여부도 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업 및 지역의 특성, 현안 등에 대한 협의기관 및 전문 검토기관에서 전문적·과학적 검토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사항이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사후적 갈등 관리 방안으로서 사전적 갈등 방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비공개 정보 최소화, 디지털 시각화 정보 제공 등 주민 알권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논의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16)안 제52조의4(심층평가 대상 결정) 제3호 및 제4호

3.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검토·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7)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52조의7(전문가 자문 등)에 대해서도 협의회의 기능 중복으로 위원회 설치의 적절치 않으며, 이에 부수되는 위원회 자문단 구성 조문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18)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개정안이 심층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19)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해 부족, 불투명한 사업 추진(정보접근 한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업 반대, 자연환경영향 조사 부실 여부 등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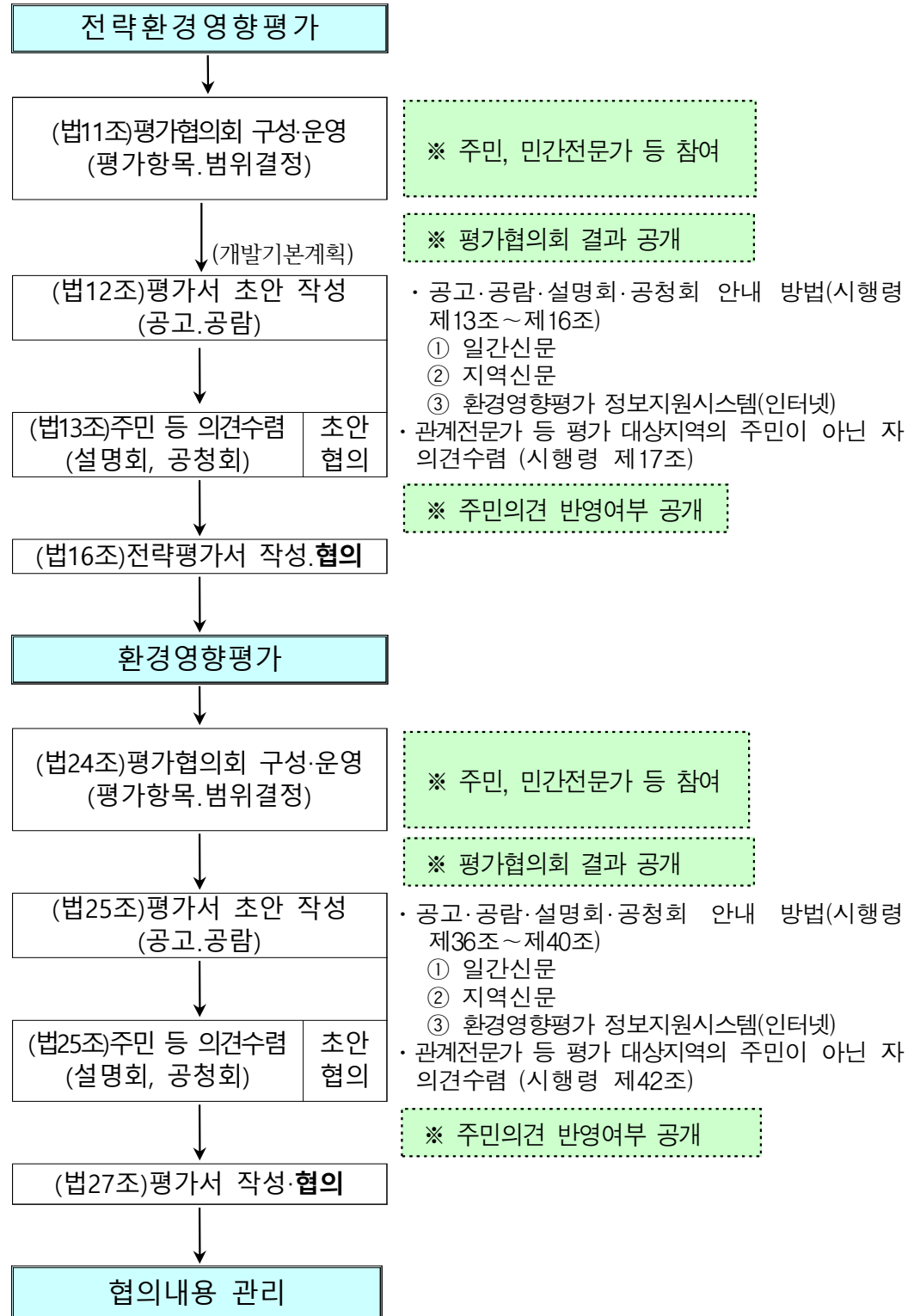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541

20)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평가서등 비공개 요청 사유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마련('26)과 평가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25년 기획연구, '27~'31년 R&D)을 추진하고 있고, 중점 평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참고자료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 최근 5년간 중점평가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 중점평가사업 지정 현황('20~'24) : 해당사항 없음

□ 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현황 : 94건

사업기본정보				합동현지조사 현황		
년도	협의기관명	사업명	평가구분	합동현지조사 실시여부	검토회의 개최여부	결과반영 여부
2020	한강유역환경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	○	○	일부 반영
2020	영산강유역환경청	쌍용레미콘(주)석채취허가(재협의)	환경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맹방관광지 조성계획(변경)	환경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삼척 천봉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주)백광소재 영천광산 백광지구 광산개발사업	환경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삼척 하장면 명진 풍력발전소	소규모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정선 별문재풍력 발전사업	소규모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삼척 내봉산풍력발전사업	소규모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39광구 외 7개광구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재협의)	환경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제천 천남동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	○	X	○
2020	원주지방환경청	삼척 도계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0	대구지방환경청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	○	○	X
2021	환경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개발	○	X	○
2021	한강유역환경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개발	○	X	○
2021	낙동강유역환경청	명동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	○	X	일부 반영
2021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관광단지 지정	전략개발	○	X	일부 반영
2021	낙동강유역환경청	황강 건태,죽고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환경	○	X	일부 반영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해피니스컨트리클럽9홀증설조성사업 (재협의)	전략개발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암군미암면채지리816-2번지개간사업	소규모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화순군백아면와천리537-3번지일원태양광 발전소부지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업	전략개발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영광군염산면두우리(주)글로리영광14호, (주)두우리1호발전소태양광	소규모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영광군염산면두우리(주)글로리영광12,13호 태양광	소규모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영광군염산면두우리(주)글로리영광8호태양광	소규모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산배수지(고지배수지)건설공사	소규모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신안안좌면자라리태양광발전시설조성사업(신안군안좌면자라리929-9번지일원)	소규모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GFEZ화양지구골프장조성사업)(재협의)	환경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항광역준설토투기장조성공사	환경	○	X	○
2021	영산강유역환경청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사업	환경	○	X	○

사업기본정보				합동현지조사 현황		
년도	협의기관명	사업명	평가구분	합동현지 조사 실시여부	검토회의 개최여부	결과반영 여부
2021	원주지방환경청	평창 용평관광단지 조성사업(재협의)	환경	○	X	○
2021	원주지방환경청	육백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1	원주지방환경청	청우산업㈜ 석산개발사업	환경	○	X	○
2021	원주지방환경청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개발	○	X	○
2021	원주지방환경청	대관령 동진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1	원주지방환경청	가산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소규모	○	X	○
2021	원주지방환경청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	○	X	○
2021	원주지방환경청	평화교 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	○	X	○
2021	원주지방환경청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략개발	○	X	○
2021	대구지방환경청	도산 관광휴양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개발	○	X	X
2021	대구지방환경청	청송산림레포츠휴양단지조성사업	전략개발	○	X	○
2021	대구지방환경청	웰빙-스테이레포츠관광단지조성사업	환경	○	X	○
2021	대구지방환경청	청송군주왕산면상평리토석채취사업(21.1. 20)	소규모	○	○	○
2022	환경부	강릉안인풍력발전사업	소규모	○	X	○
2022	환경부	태백고산 통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2	낙동강유역환경청	황강 죽고지구 하도정비사업	소규모	○	X	○
2022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대원씨앤엠 석산개발사업	환경	○	X	○
2022	낙동강유역환경청	진해 가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	○	X	○
2022	금강유역환경청	보령시시도12호선도로개설공사	소규모	○	X	일부 반영
2022	금강유역환경청	금산천내친환경복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 업	환경	○	X	○
2022	금강유역환경청	공주그리심CC조성사업	환경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웅천마리나항만개발사업	환경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영광군군남면남창리산87번지일원동식물 관련시설(축사)산출및진출입로조성공사	소규모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진상이천~진월신기간군도개설공사	소규모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은도지오국제문화관광타운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암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	소규모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신안비금태양광1호발전소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영광군염산면야월리(주)글로리영광17,18호 태양광	소규모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장좌도유원지개발사업	환경	○	X	○
2022	영산강유역환경청	영광군염산면두우리(주)글로리영광9,10,11 호태양광	소규모	○	X	○
2022	원주지방환경청	충북 음성(실크밸리) 골프장 조성사업	환경	○	X	○
2022	원주지방환경청	영월군 카르스트 지질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2	대구지방환경청	영양군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결 정변경	소규모	○	○	X
2023	환경부	17-공-A지역(사드)	환경	○	X	○
2023	환경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개발	○	○	○
2023	낙동강유역환경청	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	○	X	○

사업기본정보				합동현지조사 현황		
년도	협의기관명	사업명	평가구분	합동현지 조사 실시여부	검토회의 개최여부	결과반영 여부
2023	낙동강유역환경청	황강 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	○	X	○
2023	금강유역환경청	공주골드리버CC증설사업	환경	○	X	○
2023	금강유역환경청	태안신두리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소규모	○	X	○
2023	금강유역환경청	공주유구(2)채석단지지정	환경	○	X	○
2023	금강유역환경청	신석개발산업(주)석산개발사업(증설)	환경	○	X	○
2023	금강유역환경청	(주)청오산업토석채취사업	환경	○	X	○
2023	원주지방환경청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4구간)	환경	○	X	○
2023	원주지방환경청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6구간)	환경	○	X	○
2023	원주지방환경청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	환경	○	X	○
2023	원주지방환경청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구간)	환경	○	X	○
2023	원주지방환경청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2구간)	환경	○	X	○
2023	원주지방환경청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	환경	○	X	○
2023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상관면죽전일환경의료폐기물소각 시설설치사업	소규모	○	○	○
2024	환경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	○	X	○
2024	환경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개발	○	X	○
2024	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전략개발	○	X	○
2024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	○	X	일부 반영
2024	낙동강유역환경청	내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	○	X	○
2024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3공구)	환경	○	X	○
2024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주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개발	○	X	○
2024	낙동강유역환경청	엄궁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	X	○
2024	영산강유역환경청	흑산공항건설공사	환경	○	○	○
2024	영산강유역환경청	완도군내리연립주택신축공사를위한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	전략개발	○	X	○
2024	영산강유역환경청	고흥군포두면남촌리1035-1번지일원염해 간척지태양광발전소조성사업	소규모	○	X	○
2024	영산강유역환경청	고흥군포두면송산리1656-1번지외198필 지태양광발전부지조성공사	소규모	○	X	○
2024	영산강유역환경청	신안군구대리농경지태양광발전사업	소규모	○	X	○
2024	원주지방환경청	북충주IC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	○	X	○
2024	원주지방환경청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도로건설공사	환경	○	X	○
2024	전북지방환경청	순창로제비양C.C(대중제18홀)조성사업	환경	○	X	○

※ 합동현지조사 결과 미반영 사업(3건)은 평가 협의 반려 또는 부동의 사업임

□ 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현황(‘20~‘24)

사업기본정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년도	협의기관명	사업명	평가구분	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 개최 여부	결과반영 여부
2023	대구지방환경청	(주)이에스지경주(구.원예코(주)소각시설증 설(주)에코비트에너지경주)	환경	○	○
2023	대구지방환경청	안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 정(변경)	전략개발	○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3. 현행법 제52조(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와 안 제52조의4 (심층평가 대상 결정) 조문비교

법 제52조의2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²¹⁾	안 제52조의4 (심층평가 대상 결정)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등 갈등이 있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검토·협의 등이 필요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검토·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별표 4의2]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이하 생략)